

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

2012.08.01.일부개정 2014.03.28.일부개정 2018.07.01.일부개정 2011.08.29.제정
2021.06.01.일부개정

<장애학생지원센터>

제1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직무 및 기능, 조직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직무) 센터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·수행한다.

제 3 조 (기능) 센터는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·학습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·설비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을 위한 학사, 진로, 생활 등의 상담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6. 교직원 및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7. 기타 장애학생과 관련된 사항

제2장 조직

제 4 조 (구성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(개정 2012.8.1.)

② 센터장은 센터에 관한 사무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,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

③ 센터에는 행정 및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④ 센터에서는 장애학생지원업무 보조를 위하여 각 학과 조교 및 자원봉사자 등을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3장 위원회

제 5 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에서는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**교무처장, 기획처장**, 학생처장, 입학홍보처장, 사무처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,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**개정** 2012.8.1., 2014.03.28., 2018.7.1., **2021.6.1.**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
2. 주요사업과제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
3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5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조 (자문위원) ① 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본교 또는 타기관의 장애인관련 전문가(장애인단체장, 장애인복지시설장, 장애인고용센터장, 특수교육전공교수, 재활의학전공교수 등)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특별지원위원회

제 7 조 (특별지원위원회) 「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」(이하 “특수교육법”이라 한다) 제29조와 관련하여 본 센터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8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 학습권 관련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정하는 사항

제 9 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**교무처장, 기획처장**, 학생처장, 사무처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3인의 교원으로 하고,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 (**개정** 2012.8.1., 2018.7.1., **2021.6.1.**)

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센터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 10 조 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특수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1 조 (심사청구등) ① 장애학생 및 해당 보호자가 총장에게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장애학생 및 해당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(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)과 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(별지 제1호 서식)를 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통지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⑥ 총장, 교직원,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제 12 조 (제척과 회피) 위원은 심사대상 청구사건의 책임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5장 보칙

제 13 조 (운영세칙)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제2항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